경제혁신 3개년 계획 "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"
대한민국 재도약의 힘, 창조경제
경 제 혁 신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산업통상자원부 **보도참고자료**

**배포즉시 보**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배포일시 | 2016. 9. 7. (목) | 담당부서 | 통상법무과 |
|---|---|---|---|
| 담당과장 | 신정훈 과장(044-203-5770) | 담 당 자 | 장재량 서기관(044-203-5772) |

# 세계무역기구(WTO) 한-미 세탁기 분쟁 최종 승소

□ 9.7(수) 23:00(한국시간) 확정된 세계무역기구(WTO) 한-미 세탁기 분쟁 상소심 최종판정 결과, 반덤핑 관련 쟁점 전부승소, 상계관세 관련 기존 패소쟁점에 대한 승소 등 압도적인 결과를 도출해, 대미국 수출여건 개선은 물론, 최근 강화되고 있는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평가된다.

□ WTO 상소기구(Appellate Body)는 9.7(수) 23:00(제네바 현지시각 9.7(수) 16:00),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와 관련한 상소심 최종보고서를 확정해 회람했다.

○ '12.12월 미국 상무부의 최종판정*에 따라 우리측은 '13.8월 세계무역기구(WTO)에 제소했으며, 우리나라가 승소한 패널 판정이 '16.3월 회람된데 이어 이번 상소심 판정으로 최종 확정했다.

* 반덤핑관세(삼성 9.29%, LG 13.02%), 상계관세(삼성 1.85%)

## 1. 상소심 판결개요

□ 상소심은 표적덤핑 판정, 표적 덤핑에 대한 제로잉 적용 등 반덤핑 관련 쟁점과, 보조금 계산방식, 보조금의 지역적 특정성 여부 등 상계관세 관련 쟁점에 대해 최종 판정을 내렸다.

○ **(반덤핑 쟁점)** 상소기구는 미 상무부가 삼성·엘지(LG)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판매를 표적덤핑(targeted dumping)*으로 판단한 것과, 제로잉(zeroing)*을 적용하여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(WTO)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하여, 우리측이 전부 승소했다.

* (표적덤핑) 특정 시기, 장소, 구매자에 대해 덤핑이 발생하는 경우로서, 세계무역기구(WTO) 협정은 이 경우 해당 거래와 정상가격을 비교하여 덤핑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

* (제로잉) 덤핑마진 산정시 수출가격이 국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(덤핑)만 반영하고 수출가격이 국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를 마진 계산시 반영하지 않고 "0"으로 처리하여 최종 덤핑마진을 높게 부풀리는 방식

○ **(상계관세 쟁점)** 보조금 계산방식과 관련하여 패널단계에서 우리측이 패소했던 판정을 상소기구에서 우리측이 최종 승소하는 등 우월한 분쟁결과를 도출했다.

* 동 판정이 이행되는 경우, 한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미국이 부과하는 상계관세(원심 1.85%, 재심 34.77%)는 그 조치 자체가 종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

- (계산방식 쟁점1) 삼성전자의 전체 연구개발(R&D)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세탁기에 대한 보조금율 계산에 반영한 미국 상무부의 조치를 세계무역기구(WTO) 보조금 협정 위반으로 판정했다.(한국 승소)

- (계산방식 쟁점2) 보조금 계산시 삼성전자의 해외매출을 고려하지 않은 미국 상무부의 조치를 세계무역기구(WTO) 보조금 협정 위반으로 판정했다.(한국 승소)

- 다만, '수도권 과밀억제권역' 이외 지역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은 '지역적 특정성'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정했다. (패널결정 재확인; 미국승소)

* 이외 연구개발(R&D) 세액공제가 사실상 특정 기업에 지급된 보조금이라고 간주한 미국 상무부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(WTO)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는 패널의 판정도 확정됨 (한국 승소; 미국이 상소를 포기함)

## 2. 상소심 판정 의의 및 기대효과

□ **(보호무역 선제대응)** 금번 판정은 표적덤핑을 활용한 제로잉에 대해 한국이 최초로 세계무역기구(WTO)에 제소했고, 미국의 상계관세조치까지 제소대상에 포함한 포괄적 분쟁에서 압도적인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서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.

□ **(美제로잉 관행종결)** 이번 판정은 세계무역기구가 미국의 새로운 제로잉(zeroing) 방식(표적덤핑을 활용한 제로잉)도 세계무역기구 협정위반이라는 최종 판정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제로잉은 금지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.

□ **(대미 수출여건 개선)** 미국의 이행조치*를 통해 향후 한국산 세탁기의 대미 수출여건이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며,

*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와 관련한 미국 상무부 관행 등이 수정되어야함

** (세탁기 수출감소추이) 6.7억불('11)→예비판정('12)→3.5억불('13)→1.4억불('15)

* (미국 가정용 세탁기 시장, '15) 연간 900만대 규모로 월풀(20.7%), 메이텍(14.5%), 제너럴일렉트릭(GE) (12.9%), 삼성(12.8%), 엘지(12.0%) 순(출처: 트랙라인(Traqline) (수량기준))

○ 미국은 판정 이행차원에서 기존 반덤핑 조사기법을 전면 수정*해야 하므로 향후 철강 등 우리 주력 산업의 보호무역주의 대응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.

* 이번 분쟁에서 한국은 세탁기에 부과된 조치(as applied)뿐 아니라 미국의 제도자체(as such)를 제소하여 승소함

* 미국은 현재 16개 한국산 수출품(철강 13, 전기전자 2, 섬유 1건)에 대하여 반덤핑 규제·조사 중('16.8월 기준)

## 3. 향후 일정

□ 세계무역기구(WTO)는 9월 말 분쟁해결기구(DSB) 정례회의에서 동 상소기구 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며, 미국은 세계무역기구(WTO) 협정에 따라 상소기구 판정의 이행 일정을 제안하여야 한다.

* 세계무역기구(WTO) 분쟁해결양해(DSU) 제21조는 패소국에게 합리적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, 패소국이 제안한 이행기간에 승소국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행기간에 대한 중재절차 진행

○ 세계무역기구(WTO) 협정은 분쟁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, 이행기간을 최대 15개월로 제한하고 있어, 미측은 늦어도 2017년 말까지 판정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했다.

## 4. 정부 대응방향

□ 정부는 이번 상소심 판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세계무역기구(WTO)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, 미측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.

○ 또한, 정부는 금번 분쟁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우리 수출업계와 공유하여 전세계 보호주의 대응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.

첨부: 1. 제소 경과 및 대미 수출량 비교
2. 쟁점별 패널/상소심 판정 비교표
3. WTO 분쟁해결절차도 /끝/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 신정훈 과장(☎ 044-203-577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## 첨부 1 제소 경과 및 대미 수출액 현황

### □ 제소 경과

○ 월풀사의 반덤핑·상계관세 상무부 제소('11.12.30)

○ 상계관세 예비판정('12.5.30)

○ 반덤핑 예비판정('12.7.30)

○ LG 전자 반덤핑 현지실사('12.8.20~31)

○ 삼성전자 반덤핑 현지실사('12.9.10~21)

○ 상계관세 현지 실사('12.9.17~18)

○ 상무부 최종판정('12.12.19)

* 반덤핑관세(삼성 9.29%, LG 13.02%) 및 상계관세(삼성 1.85%)

○ 미 무역위(ITC) 피해 최종판정('13.1.23)

○ 삼성·LG, 전자진흥회, 정부에 WTO 제소건의('13.6.20)

○ 우리 정부, 미국을 WTO 제소('13.8.29)

○ WTO 패널판정 회람('16.3.11)

○ 패널판정에 대한 미국측 상소('16.4.19)

○ 우리 정부 맞상소('16.4.25)

○ 상소보고서 회람('16.9.7)

## □ 對美 **수출액 추이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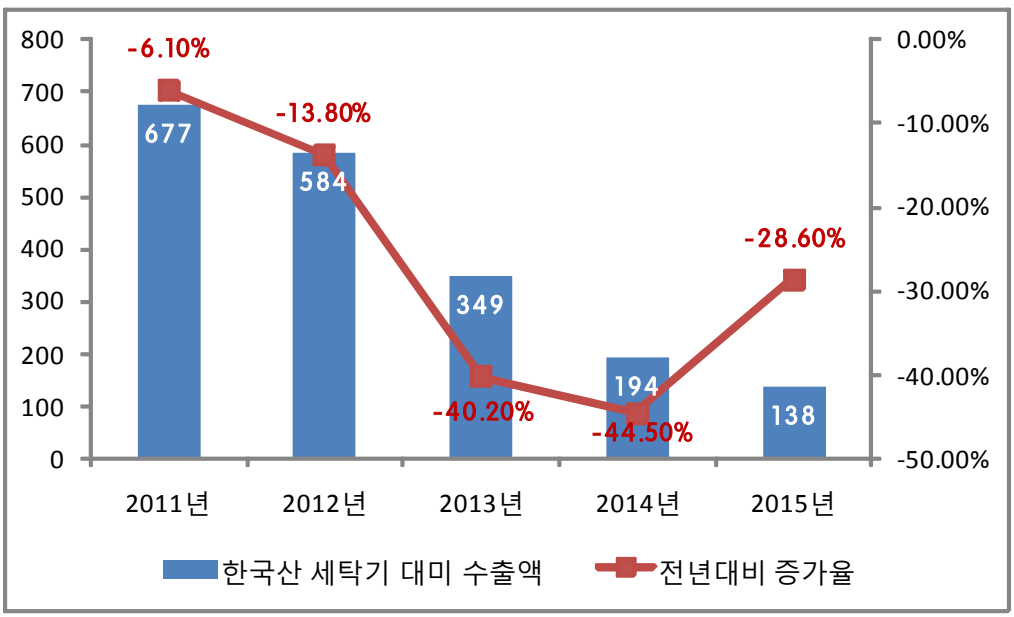
<한국의 대미 세탁기 수출입 현황 >(단위: 백만달러, 증감률%)

| 구분 | 2010년 | 2011년 | 2012년 | 2013년 | 2014년 | 2015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수출 | 721<br>(18.9%) | 677<br>(-6.1%) | 584<br>(-13.8%) | 349<br>(-40.2%) | 194<br>(-44.5%) | 138<br>(-28.6%) |
| 수입 | 4<br>(28.3%) | 2<br>(-42.5%) | 2<br>(-5.5%) | 2<br>(-21.8%) | 2<br>(-10.7%) | 2<br>(19.0%) |
| 수지 | 717 | 675 | 582 | 348 | 192 | 136 |

* 출처: 무역협회 통계, 세탁기 HS 8450 기준

**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('12.8월 예비판정 이후 관세납부 중)에 따라 부터 수출 급격히 감소

(단위 : 백만달러)



## 붙임 2 주요쟁점별 패널/상소심 판정 비교

| 구분 | | 쟁점 | 상소기구 판정 (16.9.7) | 패널판정 (16.3월) |
|---|---|---|---|---|
| 반덤핑 | 표적덤핑 | - **표적덤핑 판단기준**: 미측의 표적덤핑 판단기법(Differential Price Test)이 반덤핑협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| **승소** | **승소** |
| | | - 설명의무: 미측이 통상적인 가격비교방법(평균-평균, 거래-거래)을 적용할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 | **승소** | **승소** |
| | 제로잉 | - **제로잉 허용 여부**: 표적덤핑이 인정될 경우 제로잉 가능여부 | **승소** | **승소** |
| | | - 평균-거래 **비교방법의 적용범위**: 표적덤핑된 거래뿐 아니라 조사대상 거래 전체에 제로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| **승소** | **승소** |
| | | - 표적덤핑된 거래와 기타 거래군의 덤핑마진 합산시 제로잉 적용가능성(Systemic disregarding) | **승소** | 패소 |
| 보조금 | 특정성 | - **사실상 특정성** : 삼성에 대한 세액공제(보조금)의 절대액이 크다는 점이 동 보조금에 사실상 특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| **승소** | **승소** |
| | | - **지역적 특정성**: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(전체 국토의 98%)에 투자시 세액공제를 제공한 것에 특정성 인정여부 | 패소 | 패소 |
| | 보조금 계산 방식 | - **Tying**: 세탁기에 지원된 금액이 아닌 삼성전자 전체에 지원된 금액으로 보조금 비율을 계산한 점이 보조금협정을 위배했는지 여부 | **승소** | 패소 |
| | | - **해외매출액 포함 여부**: 보조금 비율 계산시 삼성의 해외매출액을 제외한 점이 보조금협정을 위배했는지 여부 | **승소** | 패소 |

# 붙임 3 WTO 분쟁해결 절차도

